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해경의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 법적근거 마련〉
■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16057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성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긴급 수거·처리 근거 신설	3
2. 해양경찰청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 부여	10
3. 권한 등의 위임·위탁	14
4. 과태료 부과권 신설	17
[참고자료]	21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영진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1. 15.
3. 회 부 일 : 2026. 1. 1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해안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유·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이 각각 수거·처리 주무기관이며, 해양경찰청은 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음.

그러나 해양경찰청도 해양오염 예방과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평시에도 해양 쓰레기 수거·처리 등 정화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해양경찰청이 수거한 해양쓰레기만 해도 약 2,480톤에 달하는 등 현장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임무는 ‘행정적·기술적 지원’과 ‘오염사고 대응’에만 한정되어 있어 평시의 정화·수거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임. 이로 인해 해양경찰청의 현장 조치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을 직접 수거·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양폐기물 조사·정화 및 예방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긴급 수거·처리 근거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해양폐기물의 긴급 수거·처리, 관련 조사 및 정화, 교육·홍보 등 해양폐기물 관련 현장 집행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 신설).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설>	제15조의3(해양폐기물의 긴급 수거·처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행안전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해양폐기물의 긴급 수거·처리 2.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발생한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또는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의 조사 및 수거·정화 활동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u>교육·홍보 또는 민관협력 활동</u> <u>5. 그 밖에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u> <u>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u>
--	--

나. 검토의견

□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이하 “현행법”이라 함)은 해양수산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양폐기물의 수거 및 관리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2조¹⁾는 해안폐기물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해안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3조 및 제14조에서는 해역관리청(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²⁾이 관할 해역의 해상·해중에

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2조(해안폐기물의 수거) ①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구역의 바닷가에 있는 해양폐기물(이하 “해안폐기물”이라 한다)을 수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안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해안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해안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해안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해역관리청”이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해역관리청을 말한다.

떠 있거나(부유폐기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침적폐기물)을 수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³⁾⁴⁾

- 해양경찰청은 전국적으로 배치된 경비함정과 방제함정 등 현장 대응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근 5년간 약 2,480톤의 해양폐기물을 수거하는 등 지속적인 정화활동과 대국민 참여 캠페인 등을 추진해 왔으나, 이러한 현장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접적인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⁵⁾.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해역관리청”이란 관할해역의 해양환경개선, 해양오염방지활동 등 해양환경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관청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가.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내수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은 해당 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나.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 및 항만 안의 해역은 해양수산부장관

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3조(부유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관할 해역의 해상 또는 해중에 떠있는 해양폐기물(이하 “부유폐기물”이라 한다)이 다른 해역으로 이동하거나 해저에 침적되기 전에 수거하여야 한다.

- ② 해역관리청은 부유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부유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부유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부유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부유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4) 제14조(침적폐기물의 수거) ① 해역관리청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이하 “침적폐기물”이라 한다)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해역의 침적폐기물을 수거하여야 한다.

- ② 해역관리청은 침적폐기물의 발생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에게 침적폐기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거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침적폐기물의 수거명령을 받은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폐기물수거업 등록을 한 자에게 수거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침적폐기물의 수거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침적폐기물 수거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5)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6년도 해양경찰청 소관 예산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검토보고서」, 2025.11. p.53.

<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등 활동(해양경찰청) >

		
연안정화활동	재해쓰레기 수거	대국민 참여 캠페인

자료: 해양경찰청

* 참고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실적 및 장비 현황」 참조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관리 업무는 제5조의26)에 따른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참여, 제29조7)에 따른 일반적인 행정적·기술적 지원 등에 그치고 있고,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5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 ①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3조의2(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외교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해양경찰청장**.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7) 제29조(행정적·재정적 및 기술적 지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2. 제11조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유입 차단조치
3.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양폐기물의 수거
4. 제15조에 따른 선박 및 시설 등의 건조·설치 및 운영
5. 제15조의2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운영
6. 제16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의 정화
- 6의2. 제17조에 따른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이 완료된 해역의 사후관리
7. 그 밖에 수거한 해양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조치

② 국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활동, 수거·정화 활동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섬지역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의 대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양환경관리법」에서도 해양경찰청의 임무는 오염물질이 배출되거나 배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방제 조치 등에 국한되어 있어⁸⁾, 일상적인 해양폐기물의 정화·수거 활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는 미흡한 것으로 보임.

□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긴급 수거·처리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해양오염 확산 우려가 있거나 자연재해로 발생한 대규모 해양폐기물 등에 대하여 해양경찰청의 현장 대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해양폐기물 관리 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의 해양정화 역량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개정안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해양폐기물 수거·관리 주체로 추가되는 경우 기존에 해당 업무를 수행해왔던 해양수산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업무 중복이 우려될 수 있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해안가 폐기물은 기초지자체가, 해상에 떠있거나 가라앉은 부유·침적 폐기물은 해역관리청(해양수산부 및 시·도지사)이 각각 수거 책임을 지고 있는데, 개정안

8) 「해양환경관리법」

제61조(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제62조(방제대책본부 등의 설치), 제63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64조(오염물질이 배출된 경우의 방제조치), 제68조(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제68조의2(해양자율방제대) 등 참고

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업무근거가 신설될 경우, 기존 관리 주체들과의 업무 범위가 중첩되고 책임 소재가 모호해질 소지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기관 간 협력 방식과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등 해역관리청과 기능 중복 방지를 위해 해양경찰청 직무범위 내에서 긴급한 경우 해양폐기물 관리 지원 기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함.

둘째, 개정안은 현행법의 목적에 맞게 일부 문구가 수정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이 항행안전이나 해양오염 방제(防除) 등을 위하여 해양폐기물의 긴급 수거·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⁹⁾, 이는 해양경찰청이 「정부조직법」¹⁰⁾상 해상 경찰 및 오염 방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규정인 것으로

9) 안 제15조의3(해양폐기물의 긴급 수거·처리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항행안전을 저해하거나 해양오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해양폐기물의 긴급 수거·처리
2.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대량으로 발생한 해양폐기물의 수거
3. 접근이 어려운 해안가 또는 해저에 침적된 해양폐기물의 조사 및 수거·정화 활동
4. 해양폐기물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또는 민관협력 활동
5. 그 밖에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활동

10) 「정부조직법」

제47조(해양수산부) ②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경찰청을 둔다.

보임.

그러나 현행법의 취지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는 점¹¹⁾을 감안하여, 해양경찰청의 긴급 수거·처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의 관리, 해양폐기물로 인한 오염 예방 등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셋째, 신규 업무 수행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 확충이 병행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해양경찰청의 본연의 업무인 치안 및 방제 업무 외에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등 상시 정화 활동 임무가 추가될 경우 기존 인력과 장비에 가해지는 업무 부하가 가중되어 대응 역량이 분산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의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추가 인력 증원과 전용 수거 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 확보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1)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을 환경친화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환경의 보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해양경찰청에 대한 출입·검사 권한 부여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상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 대한 출입·검사 및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이하 “출입·검사권”이라 함)을 해양경찰청장에게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출입·검사 등) ① <u>해양수산부장관</u>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보관·처리 현황을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출입·검사 등) ① <u>해양수산부장관 및 해양경찰청장</u>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2조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보관·처리 현황을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¹²⁾

□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상 출입·검사권의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해양환경 오염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폐기물해양배출자 등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지도·감독 권한을 강화하여 해양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에 따른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출입·검사권 부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대상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12)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2조(출입·검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폐기물관리업자, 전문기관 및 폐기물해양배출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선박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폐기물의 수거·보관·처리 현황을 확인·점검하거나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목적·성명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령」

제14조(보고 및 출입·검사 등)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보고 및 확인·점검·검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자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이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배출을 위탁한 내용 또는 실제 배출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2.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보유한 기술인력, 선박·설비·장비 및 자본금 등이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3. 해양폐기물관리업자가 법 제21조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지 여부
4.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보유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것으로 보임.

출입·검사권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기업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침익적 행정조사'의 일종으로,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¹³⁾에 따라 조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되어야 하며, 개별 법률에서는 행정조사의 목적·범위·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¹⁴⁾.

현행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검사권은 이러한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따라, 법률상 해양수산부장관이 주무관청으로서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 관리대상자들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관리업자 등에 대한 관리·감독권한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개정안과 같이 관리 업무가 없는 상태에서 단속 권한만 부여할 경우, 해양경찰청이 어떠한 법적 의무 준수를 담보하기 위해 출입·검사권을 행

13)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① 행정조사는 조사목적에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기관은 조사목적에 적합하도록 조사대상자를 선정하여 행정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동조사 등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조사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행정조사는 법령등의 위반에 대한 처벌보다는 법령등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⑤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행정조사의 대상자 또는 행정조사의 내용을 공표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4) 국회사무처, 「법제기준과 실제」, 2024. p.708.

사하는지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음.

즉, 행정조사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양경찰청이 관리·감독해야 할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를 법률에 먼저 명시하고, 해당 업무 수행에 필수적인 범위 내에서만 출입·검사권을 행사하도록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권한 등의 위임·위탁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상 위임·위탁 규정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 등에게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3조).

현행	개정안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u>해양수산부장관</u>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3조(권한 등의 위임·위탁) ① - -----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u>해양경찰청장</u> ----- ----- ----- -----.
② 이 법에 따른 <u>해양수산부장관</u>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u>해양경찰청장</u> ----- ----- ----- -----.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 <u>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u> ----- ----- -----.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33조는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및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관련기관·단체에 위임·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은 이러한 위임·위탁의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포함함으로써, 개정안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업무로 추가되는 해양폐기물 긴급 수거·처리를 위임·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해양폐기물의 수거·처리 권한을 해양경찰서 등 소속기관에 위임하거나, 특수 장비를 보유한 민간단체·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첫째, 현행법상 해양폐기물의 관리 권한은 원칙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속해 있으며,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해양경찰청은 특정한 경우 긴급 수거·처리 업무를 보조적으로 수행할 뿐이라는 점에서, 안 제33조제1항에서 권한 등의 위임 주체에 해양경찰청을 추가하는 것이 법 체계상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33조제2항은 해양경찰청장으로 하여금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해양경찰청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해야 할 상황이라면, 해양폐기물 관리 주체인 해양수산부장관이 직접 위탁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실익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4. 과태료 부과권 신설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39조(과태료) ①·② (생략)	제3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해양수산부장관</u>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 ----- ----- ----- <u>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u> -----.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현행법상 법 위반행위를 열거하고 이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⁵⁾.

1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운반장비를 이용하여 버리거나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로 한정한다)
2. 제8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8조제2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안은 과태료 부과·징수권자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해양경찰청이 현장에서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을 때 직접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해양경찰청은 신속하게 불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현장 기동력과 함께 「해양환경관리법」¹⁶⁾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법 집행의 효과성을 제고 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점이 있음.

□ 다만, 과태료는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에서 부과권자 및 부과대상이 분명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나,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별도의 단속규정이나 이를 위반할 경우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근거는 신설하지 않고 안 제39조제3항에서 해양경찰청의 포괄적인 과태료 부과·징수권한만 추가하고 있음.

-
4.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5.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처리실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처리실적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처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비치한 자
 6.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보관·관리한 자, 폐기물인계·인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또는 폐기물인계·인수서 사본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양폐기물관리업의 권리·의무 승계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4항 후단 또는 제18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
3. 제21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4. 제30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6) 「해양환경관리법」

제13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제132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경찰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즉,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의 단속규정 및 처벌규정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 전반에 걸친 과태료 부과권을 해양경찰청이 가지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2011.6.30. 2009헌마406 결정¹⁷⁾에서 “헌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 근거하도록 한 ‘법률’은 개별적 또는 구체적 사안에 적용할 작용법적 조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조직법적 규정까지 포함하는 것이 아니며, 이를 일반적 수권조항이라고 보는 것은 각 경찰작용의 요건과 한계에 관한 개별적 수권조항을 자세히 규정함으로써 엄격한 요건 아래에서만 경찰권의 발동을 허용하려는 입법자의 의도를 법률해석으로 뒤집는 것”이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또한, 현행법상 과태료 규정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관리 권한을 가지는 범위만 행위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¹⁸⁾, 개정안에 따라 현행법상 관리·단속권한이 없는 해양경찰청에게 과태료 부과권을 부여하는 것이 법체계와 해양경찰청의 업무 범위에 부합하

17) 경찰이 경찰버스들로 서울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싸 통행을 제지한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 판례

18)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39조(과태료) 제1항 및 제2항은 현행법 제7조(폐기물의 해양배출금지), 제8조(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해양배출), 제18조(준설품질 등의 활용), 제19조(해양폐기물관리업의 등록), 제21조(해양폐기물관리업자의 의무), 제23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0조(해양폐기물등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조항에서 규정된 의무의 관리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임.

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대해서는 「국회법」 제79조의2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요구서가 제출된 상태로, 재정소요와 관련하여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가 첨부될 예정임(추후 관련 내용 보완 예정).¹⁹⁾

문 의 처

02)6788-5422

19) 국회예산정책처는 의원 또는 위원회가 요구한 비용추계에 대하여, 법안의 내용에 따라 ①비용추계서, ②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③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로 구분하여 작성·회답함. 비용추계서는 재정이 수반되고 소요 비용의 추계가 가능한 법안, 미첨부 사유서는 재정이 수반되기는 하지만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법안, 미대상 사유서는 시행되더라도 재정이 수반되지 않거나 재정부담에 변화가 없는 법안에 대하여 작성됨(국회예산정책처, 법안비용추계 이해와 실제, 2024, p. 29)

참고

해양경찰청의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실적 및 장비 현황

□ '23년 이후 해양경찰청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처리 실적

구분		세부내용					
해양 폐기 물 수거 실적 등	재해쓰레기 수거지원 (‘23~’25)	연도	횃 수(회)	수거량(톤)	참여인원(명)	동원선박(척)	동원차량(대)
		’23년	30	170.5	699	30	8
		’24년	4	28	204	0	5
		’25년	10	85.4	354	17	7
	안전활동 (‘23~’25)	연도	횃 수(회)	수거량(톤)	참여인원(명)	동원선박(척)	동원차량(대)
		’23년	271	667.7	12,201	143	123
		’24년	276	640.9	14,769	103	195
		’25년	366	724.8	14,041	110	127
	안전생수병 수거현황* (‘23~’25)	연도	해경서	실시지역	참여어선(척)	수거량(톤)	수거개수(추정)
		’23년	6	15	616	6.8	14.4만개
		’24년	8	20	1,264	11.7	25만개
		’25년	8	24	1,490	16.4	35만개
	* `우생순 사업(우리 생수병 되가져와 자원으로 순환해요) 실시						
	교육홍보 (‘23~’25)	연도	언론홍보(회)	간담회(회)	교육컨설팅(회)	사진전시(회)	공모전(점)
		’23년	492	24	175	68	548
		’24년	611	52	132	49	439
		’25년	530	77	134	31	411
	해양폐기물 수거관련 해경청 보유장비현황 (’25년)	연도	항공기	함정	벨트식 유화수기	수거집게 크레인	
		현황	25대 (비행기 6대, 헬기 19대)	365척 (경비 188척, 특수 177척)	9대	3대	
		인력	452명	4,235명	-	-	
	역할	해양쓰레기 분포확인		해상예찰, 수거		부유쓰레기 수거	
						부유쓰레기 수거	

□ 해양경찰청 해양폐기물 관련 보유 장비·인력 현황('25)

종류	항공기	함정	벨트식 유화수거	수거집게 크레인
양호	25대 (비행기 6대, 헬기 19대)	365척 (경비 188척, 특수 177척)	9대	3대
인력	452명	4,235명	-	-
유형	해양쓰레기 분포확인	해상예찰, 수거	부유쓰레기 수거	부유쓰레기 수거
				

□ '13년 이전 해양경찰청 해양폐기물 관련 업무처리 실적

구분		세부내용				
해수부 업무이관 전 실적 ('11~'13년)	연안정화 및 교육홍보 활동 ('11~'13)	연도	수거량(톤)	참여인원(명)	언론홍보(회)	교육(회)
		'11년	3,272	61,052	3,041	508
		'12년	3,814	46,986	1,784	901
		'13년	3,038	46,576	2,115	779
	해양환경보전관련 공표현황 ('11~'13)	연도	그림그리기(점)	사진대전(점)	해양환경교실	
					횟수(회)	참석인원(명)
		'11년	13,876	4,790	40	3,310
		'12년	15,810	1,937	58	4,027
		'13년	31,980	3,022	34	1,923
	오염물질 분석 실적 ('11~'13)	연도	합계(점)	해양배출 폐기물 분석(점)	유류분석(점)	
		'11년	1,591	412	1,179	
		'12년	1,162	235	927	
		'13년	1,031	128	903	
	폐기물 해양배출입검사 실적 ('11~'13)	연도	합계(개소)	해양배출업체(개소)	폐기물 위탁업체(개소)	폐기물 운반선(척)
		'11년	1,672	49	1,587	36
		'12년	1,252	33	1,191	28
		'13년	2,059	22	2,023	14

□ 해양경찰청 선박·해양시설 지도점검 현황('21-'25)

구 분	계	선 박 (척)					시 설 (개소)			
		소 계	유조선	화물선	어 선	기타선	소 계	해양 시설	관리업	기타
평균 (‘21~ 25년)	3,796	2,656	544	177	824	1,111	1,140	1,064	76	
‘21년	3,386	2,233	482	143	702	906	1,153	1,079	74	-
‘22년	3,585	2,501	501	135	845	1,020	1,084	1,014	70	-
‘23년	3,752	2,640	475	143	864	1,158	1,112	1,030	82	-
‘24년	3,867	2,709	581	198	813	1,117	1,158	1,072	86	-
‘25년	4,389	3,194	679	264	895	1,356	1,195	1,123	72	-